2015년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설명회 자료집

* 본 자료집은 설명회를 위한 자료집으로 확정안내서가 아니며,
확정된 자료집은 추후 발송 예정입니다.

2015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안내서

일시 I 2015. 5. 8(금) 14:00

장소 I 중소기업중앙회[그랜드홀]

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

2015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설명회 일정

시간	프로그램	세부내용
13:00-14:00	접수	○ 참석자 안내 및 등록 ○ 자료집 배부
14:00-14:10	개회	○ 인사말씀
14:10-14:30	2015년 평가개요	○ 2015년 평가 개요설명
14:30-16:30	평가지표설명	○ 2015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지표설명
16:30-16:45	휴식	
16:45-17:45	질의응답	
17:45-	폐회	○ 설명회 종료

※ 본 설명회는 센터별 1명(접수대에 등록하신 이름을 기준)에 한하여 종사자 교육 3시간을 인정해 드립니다.

※ 수료증은 별도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2015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추진계획

□ 평가개요

○ 평가 대상기간: ’15. 1. 1~’15. 12. 31(12개월)

○ 평가 방법: 성과관리시스템 및 서류평가

○ 평가자료입력: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성과관리시스템

○ 평가 추진체계

수행주체	역할 및 수행내용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평가 업무 총괄
중앙자활센터	평가업무 실무 총괄 (계획수립, 평가실행, 결과산출 등) ※ 추진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5조의2 제1항 3호에 따라 자활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를 시행 토록함.
지방자치단체	평가계획 증빙공지, 평가자료 확인서 제출, 서류평가결과 및 이의신청확인
지역자활센터	평가지표에 따른 기초자료 입력, 평가지표에 따른 실적 및 증빙서류 제출

□ 유형별 평가지표

◇ 모든 유형에 적용되는 **공통지표는 78점**, 지역특성 등을 반영하는 **특성화지표는 22점**

○ 지표내에 가산하는 **‘가산점’을 4점(취업유지율, 참여자인적자본지원향상)**의 범위내에서 적용(예정)

※ 정부자료 조사 협조에 대한 가산점 1점 (패널조사 등 추후공지 할 조사 협조에 대한 가산점부여 예정)

1 공통지표

○ 자활성과, 자활사업단 운영, 자활기업(공동체) 지원, 참여자 관리, 센터 운영 등의 5개 대지표로 설정

2 특성화지표

○ 외부자원후원, 지역유형별 특화사업 개발 및 발굴, 지역일자리 연계 및 특화사업 등 도시형, 도농형, 농촌형 지역자활센터유형에 반영되는 지표로 설정

3 추가가산점설정

○ 최대 5점의 가산점을 부여

- 기존의 3·6개월 취업유지율을 3개월 취업유지율로 통합하여 6개월 유지자에게 가산점(2점)부여
- 참여자 인적자본향상지원에서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참여자에게는 가산점(2점)부여
- 정부자료 조사 협조에 대한 가산점(1점)부여 (패널조사 등 추후공지 할 조사 협조에 대한 가산점부여 예정)

4 평가 증빙서류 제출

○ 평가 증빙서류 제출방법

- 센터별로 각 2부를 작성(제본)하여 (공문첨부) 1부는 해당 지자체, 1부는 중앙자활센터에 제출
- 제출기한 : 2016년 2월 22일(월) 18시까지 도착분 (시간엄수)*추후 변동가능

  ※ 18시까지 도착하지 않을시에는 별도 전화통지예정(전화통지가 없을 경우 수령완료)
- 주　소 : (100-863)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13, 7층

  (구, 충무로 4가 126-1 일흥빌딩 7층) 중앙자활센터 총괄기획팀
- 기타문의 : 02) 3415-6934 / sparrow20@cssf.or.kr

□ 평가 세부일정

단계	구분	내 용	기간
사전 준비	지역자활센터 평가지표 설명회	(중앙자활센터) 평가 설명회	2015년 5월 8일(금)
1단계	기초자료 입력	(지역자활센터)행복e음 참여자 배정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	2016년 1월 15일(금)까지
2단계	추가 입력	(지역자활센터) 성과관리시스템에 입력	2016년 1월 25(월) ~ 2월 12일(금)까지
3단계	평가 제출서류 양식 다운	(지역자활센터) 성과관리시스템에서 평가지표별 서류양식 다운	
4단계	평가 증빙서류 제출	(지역자활센터)평가지표별 증빙서류 제본 및 제출	2016년 2월 22일(월) (18까지) ※시간엄수
5단계	1차 결과 발표	(중앙자활센터) 성과관리시스템에 1차 결과 발표	2016년 4월 8일(금)
6단계	이의신청 기간	(중앙자활센터) 1차결과 발표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2016년 4월 11일(월) ~ 4월 15일(금)
7단계	2차 결과발표	(중앙자활센터) 이의신청 반영된 2차 결과발표	2016년 4월 말
8단계	평가결과 산출	(중앙자활센터) 최종 평가 결과 산출	2016년 4월 말
9단계	최종결과 발표	(복지부) 최종 평가 결과 발표	2016년 5월 초

※ 평가진행사항에 따라 세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추후확정일 고지예정)

1. 2015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지표구성별 배점 구성

1 2015년 지역자활센터 지표구성별 배점 구성

구분	지 표 명			배점 15년	비고
공통 지표 (78점))	①자활 성과 (16)	자활 성공률	일반기업 취·창업, 정부재정투입 일자리 (바우처사업단·타기금 사업단 취업) 자활기업 취·창업률	7	
			탈수급률(자활특례포함)	5	
		취업 유지율	취업 유지율	4	
	②사업단 운영 (20)	시장진입형 사업단	1인당 연평균 수익금	4	
			1인당 월평균 매출액	3	
		사회 서비스형 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이용자 전체 만족도	3	
			1인당 연평균 수익금	2	
			1인당 월평균 매출액	2	
		참여자 인적자본 향상지원	전문자격증 취득율(1년 이내) 민간자격증 취득율(1년 이내) 상위학위 및 검정고시취득(교육부인정)	6	
	③자활 기업 (11)	자활기업 참여자 1인당 월평균 급여액		4	
		자활기업 사회적 기여율		2	
		자활기업 일자리 증가율		2	
		자활기업 사업 지속률		3	신규
	④ 참여자 관리 (14)	직무교육 이수율		6	
		소양교육 이수율		3	
		사례관리 체계화 수준		5	
	⑤센터 운영 (17)	자산형성 지원		3	신규
		종사자 직무교육 이수율		2	
		종사자 복지지원		2	
		홍보		2	
		종사자 근속일수		2	
		재무회계 투명성	통합 수입지출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3	
			운영지원위원회 활성화 수준	3	
특성화 지표 (22점)	⑥외부자원 후원(5)		외부기관 후원연계 건수	2	
			지역의 사회적 공헌 건수	3	
	⑦지역유형별 특화사업 개발 및 발굴(9)		지자체(공공) 위탁사업 건수	3	
			민간(기업, 단체 등) 공모 및 위탁사업 건수	3	
			신규사업노력 시도	3	
	⑧지역일자리 연계 및 특화사업(8)		지역의 취약계층 지원	4	
			사회적경제 협력건수	2	
			사업단위별 네트워크 건수	2	신규

2014년과 2015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지표 비교

구분	지 표 명			배점		
				15년	14년	비고
공통 지표	①자활 성과	자활 성공률	일반기업 취·창업, 정부재정투입 일자리 (바우처사업단·타기금 사업단 취업) 자활기업 취·창업률	7	15	점수 하향
			탈수급률(자활특례포함)	5	5	동일
		취업 유지율	취업 유지율	4	6	가산점 부여(+2)
	②사업단 운영	시장진입형 사업단	1인당 연평균 수익금	4	4	동일
			1인당 월평균 매출액	3	3	동일
		사회 서비스형 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이용자 전체 만족도	3	3	동일
			1인당 연평균 수익금	2	2	동일
			1인당 월평균 매출액	2	2	동일
		참여자 인적자본 향상지원	전문자격증 취득율(1년 이내) 민간자격증 취득율(1년 이내) 상위학위 및 검정고시취득(교육부인정)	6	6	가산점 부여(+2)
	③자활 기업	자활기업 참여자 1인당 월평균 급여액		4	4	동일
		자활기업 사회적 기여율		2	2	동일
		자활기업 일자리 증가율		2	2	동일
		자활기업 사업 지속률(신규)		3		신규
	④ 참여자 관리	직무교육 이수율		6	4	가중치 조정
		소양교육 이수율		3	3	동일
		사례관리 체계화 수준		5	3	가중치 조정
	⑤센터 운영	자산형성 지원(신규)		3		신규
		종사자 직무교육 이수율		2	2	동일
		종사자 복지지원		2	2	동일
		홍보		2	2	동일
		종사자 근속일수		2	2	동일
		재무회계 투명성	통합 수입지출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3	3	동일
			운영지원위원회 활성화 수준	3	3	서류내용 조정
특성화 지표	⑥외부자원 후원		외부기관 후원연계 건수	2	2	동일
			지역의 사회적 공헌 건수	3	3	동일
	⑦지역유형별 특화사업 개발 및 발굴		지자체(공공) 위탁사업 건수	3	3	동일
			민간(기업, 단체 등) 공모 및 위탁사업 건수	3	3	동일
			신규사업노력 시도	3	3	내용변경
	⑧지역일자리 연계 및 특화사업		지역의 취약계층 지원	4	4	내용변경
			사회적경제 협력건수	2	3	기준변경
			사업단위별 네트워크 건수(신규)	2		신규

2. 2015년 지역자활센터 평가지표 주요내용

2 2015년 지역자활센터 평가지표 주요내용

1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지표내 참여자 개념

1. 평가대상 참여자의 범위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평가대상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 참여자 중 급여를 1회 이상 수령한 참여자

평가대상 범위	
자활근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게이트웨이, 시범(Pilot)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 단, 게이트웨이(gateway)참여자 30일(참여시작일~참여종료일)이상 참여한 참여자에만 한정하며 자활성과(취·창업률, 탈수급률, 취업유지율)지표에서만 포함하며 다른지표에서는 제외됨. ※ 단, 시범(Pilot)자활근로사업단은 사회서비스형 사업단과 동일하게 평가
자활기업	2010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인정된 자활기업 참여자* (*자활기업참여자 1인당 월평균 급여액, 자활기업 사업 지속률 지표만 해당) ※ 단, 자활기업 참여자중 일반인은 최저임금 이상자만 포함

○ 평가제외

- 바우처 참여자 제외, 조건불이행자 제외
- 근로유지형사업단, 인턴형, 도우미형 사업단 참여자 제외

2. 평가 기간

- 평가대상기간: 2015년 1월 1일 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3. 주요 기준

- 2015년 월 최저임금 : 1,166,220원
- 2015년 시장진입형 월 표준소득액: 878,020원

4. 검토사항

- 사업단 유형변경이 될 때(파일럿->사회서비스형, 사회서비스형->시장진입형, 시장진입형->자활기업)에는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에서 폐업처리 후 신규등록을 하여 관리를 하여야 함.

※ 만일 사업단 유형이 변경되어 신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계속운영으로 사회복지시설성보시스템에 입력을 하여 성과

시스템 이관후에도 계속운영으로 이관이 되어진 경우에는 추후 시스템입력기간에 공문 및 증빙서류 첨부하여 변경요청이 가능함.

2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지표내 종사자 개념

1. 평가대상 종사자의 범위

- 센터장
- 기관운영비를 통해 지원되는 종사자(계약직 포함)
- 희망키움통장 전담관리자
- Gateway사업단 전담관리자
- 사례관리 전담관리자
-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 전담관리자

○ 평가제외

- (평가대상 종사자의 범위에 불포함 되는) 기타 사업비 지원 종사자

3 2014년 대비 2015년 성과평가지표(안) 비교표

영역	2014년 평가지표	비고	2015년 평가지표
1 자활성과	취· 창업률	배점수정	취· 창업률
	탈수급률	유지	탈수급률
	3개월 유지율	지표통합, 배점수정	취업 유지율
	6개월 유지율		
2 사업단운영	(시장진입형사업단) 1인당 연평균 수익금	산식수정	(시장진입형사업단) 1인당 연평균 수익금
	(시장진입형사업단) 1인당 월평균 매출액	산식수정	(시장진입형사업단) 1인당 월평균 매출액
	(사회서비스형사업단) 이용자 전체 만족도	유지	(사회서비스형사업단) 이용자 전체 만족도
	(사회서비스형사업단) 1인당 연평균 수익금	산식수정	(사회서비스형사업단) 1인당 연평균 수익금
	(사회서비스형사업단) 1인당 월평균 매출액	산식수정	(사회서비스형사업단) 1인당 월평균 매출액
	참여자 인적자본 향상지원	배점수정	참여자 인적자본 향상지원
3 자활기업	참여자 1인당 월평균 급여액	평가대상자 수정	참여자 1인당 월평균 급여액
	자활기업 사회적 기여율	유지	자활기업 사회적 기여율
	자활기업 일자리 증가율	유지	자활기업 일자리 증가율
	신규지표		자활기업 사업 지속률
4 참여자관리	직무교육 이수율	배점, 평가내용 수정	직무교육 이수율
	소양교육 이수율	유지	소양교육 이수율
	사례회의 개최	지표명, 평가내용 수정	사례회의 체계화 수준
5 센터운영	종사자 직무교육 이수율	평가내용수정	종사자 직무교육 이수율
	종사자 복지지원	유지	종사자 복지지원
	홍보건수	유지	홍보건수
	종사자 근속년수	지표명 수정	종사자 근속일수
	통합 수입지출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유지	통합 수입지출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운영지원위원회 심의 및 시군구 보고	평가내용 수정	운영지원위원회 심의 및 시군구 보고
6 외부자원 후원	후원연계 건수	유지	후원연계 건수
	지역의 사회적 공헌건수	유지	지역의 사회적 공헌건수
7 지역유형별 특화사업 개발 및 발굴	지자체(공공) 위탁사업건수	평가내용 수정	지자체(공공) 위탁사업건수
	민간(기업, 단체 등) 공모 및 위탁사업 건수	평가내용 수정	민간(기업, 단체 등) 공모 및 위탁사업 건수
	신규지표		신규사업노력시도
8 지역일자리 연계 및 특화사업	지역의 취약계층자립기여율	지표명 수정	지역의 취약계층 지원
	사회적 경제관련 네트워크건수	평가내용 수정	사회적 경제관련 네트워크건수
	신규지표		사업단위별 네트워크건수

3. 2015년 지역자활센터
평가지표별 산출방법 설명 및 예시

1 자 활 성 과

<table>
<tr><td>평가지표</td><td>취·창업율</td><td>평가점수</td><td>7점</td></tr>
<tr><td>평가목표</td><td colspan="3">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가 사업단종료 후 1개월(30일)이내에 취·창업 하였는지 여부를 검토</td></tr>
<tr><td>평가대상자</td><td colspan="3">2015년에 자활근로사업단(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시범(Pilot)자활근로사업단, 게이트웨이*)에 참여한 참여자(실누계인원, 중복자 제외)중 급여를 1회 이상 수령한 참여자
*게이트웨이(gateway) 참여자는 게이트웨이과정에 30일(참여시작일~참여종료일)이상 참여한 참여자만 한정</td></tr>
<tr><td>평가내용</td><td colspan="3">□ 취업성공자 인정기준(<u>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함</u>)
①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까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했던 참여자가 자활근로사업 종료 후 1개월(30일)이내 취업한 경우
②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
③ 월급여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액(878,020원) 이상자

□ 창업성공자 인정기준<u>(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함)</u>
①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까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했던 참여자가 자활근로사업 종료 후 1개월(30일)이내 창업한 경우
② 2015년 창업자(사업자 등록증 기준)로 사업자 등록증을 취득한 자
<u>※단, 사업자 등록증을 취득하지 않고 자활기업인정서만 취득하였을 경우는 불인정</u></td></tr>
<tr><td>증빙서류</td><td colspan="3">□ 증빙서류
○ 취업성공자 필수서류: <u>(모두제출)</u>
① 취업일자를 확인 할 수 있는 문서(ex.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취업증명서 등)
② 급여를 확인 할 수 있는 문서(ex. 취업기간내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등)
③ 고용보험 가입을 확인 할 수 있는 문서(ex. 고용보험 득실확인서)
<u>※ 필수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대체서류로 제출 가능함.</u>
○ 취업성공자 대체서류:
〔양식-1〕 양식에 의거한 서류를 작성하되, <u>고용보험 사업장 관리번호</u>를 반드시 명시할 것

○ 창업성공자 필수서류:
① 2015년 창업자(사업자 등록증 기준)로 사업자 등록증을 취득한 자
<u>※단, 자활기업의 형태가 아닌 (조합, 협동조합)으로 운영될 경우</u>
- 민법상 조합의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장: 조합원이 상호출자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장: 정관, 조합원 명부를 제출(모두제출)</td></tr>
<tr><td>평가방법
(산식)</td><td colspan="3">{〔취·창업자성공자수+(취업자중 최저임금이상인원수*0.5)+(취업자중 최저임금150%이상인원수*0.5)〕/취·창업율 평가대상자} * 100

예시
A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사회서비스, 시장, 시범, 게이트웨이30일이상) 참여자수=100명
2015년 사업단 참여 취업자=10명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취업자: 월급여 878,020원 이상 ~ 1,166,220원 미만자= 7명
월급여 1,166,220원 이상 ~ 1,749,330원 미만자= 2명
월급여 원 1,749,330이상자= 1명
2015년 사업단 참여 창업자=3명
☞ 이 경우 A지역자활센터의 취·창업성공률은?
$\frac{13+(3*0.5)+(1*0.5)}{100}*100$=15%</td></tr>
</table>

비고	※ 최대 취·창업인정일: 2016년 1월 31일 ※ 자활근로사업 종료 후 희망리본사업 참여, 취성패 참여 후 취업자는 취업성공자에서 제외 ※ 2015년 최저임금=1,166,220원, 최저임금 150%=1,749,330원 ※ 취업후 퇴사하여 자활사업단 재진입한자는 취업성공자에서 제외

평가지표	탈수급률	평가점수	5점
평가목표	자활근로사업단 참여 수급자가 얼마나 탈수급을 하였나 여부를 검토		
평가대상자	2015년에 자활근로사업단(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시범(Pilot)자활근로사업단, 게이트웨이*)에 참여한 참여자(실누계인원, 중복자 제외)중 급여를 1회 이상 수령한 참여자 *게이트웨이(gateway) 참여자는 게이트웨이과정에 30일(참여시작일~참여종료일)이상 참여한 참여자만 한정		
평가내용	□ 탈수급자 인정기준 ① 수급자(일반수급, 시설수급, 조건부수급)⇒ 탈수급(자활특례, 이행특례, 차상위, 일반인) ② 평가대상기간(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동안에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했던 수급자가 탈수급한 경우를 인정		
증빙서류	□ 증빙서류 ○ 필수서류 ① 유형변경 확인일자 및 기존유형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ex. 지자체 공문 등) ② 가산점증빙을 위한 필수서류: 본인 소득증가로 인한 탈수급자의 경우 탈수급 사유 확인이 가능한 문서(ex. 지자체 확인서 등)		
평가방법 (산식)	[탈수급자수+(본인소득증가로 인한 탈수급자 수*0.5)]/ 탈수급률 평가대상자 ※ 단, 본인소득의 증가로 탈수급(**일반수급, 시설수급, 조건부수급자가 ⇒ 차상위, 일반인**)한 경우 0.5배 가산점 부여		
비고	※ 최대 탈수급인정일: 2016년 1월 31일 **※ 국기법 개정이후의 개별급여 전환시에는 생계급여에서의 탈피(중위소득 28%를 초과)를 탈수급으로 인정**		

<table>
<tr><td>평가지표</td><td>취업유지율</td><td>평가점수</td><td>4점(가산점2점)</td></tr>
<tr><td>평가목표</td><td colspan="3">3개월(90일)이상 취업을 유지한 경우이며 6개월(180일)이상 취업을 유지한 경우는 가산점 부여</td></tr>
<tr><td>평가대상자</td><td colspan="3">2015년에 자활근로사업단(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시범(Pilot)자활근로사업단, 게이트웨이*)에 참여한 참여자(실누계인원, 중복자 제외)중 급여를 1회 이상 수령한 참여자
*게이트웨이(gateway) 참여자는 게이트웨이과정에 30일(참여시작일~참여종료일)이상 참여한 참여자만 한정</td></tr>
<tr><td>평가내용</td><td colspan="3">□ 취업유지율 인정기준(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2014년 10월 3일 이후 취업한 취업성공자가 3개월(90일)이상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② 취업성공자 중 3개월 연속급여가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액(878,020원)이상자
③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 3개월 동안 동일취업기관을 인정하며 이직은 인정하지 않음.
④ 추가가산점을 받기위해서는 2014년 7월 3일 이후 취업한 취업성공자가 6개월(180일)이상 취업을 유지하며, 취업 중 6개월 연속급여가 878,020원이상이며, 고용보험자격을 취득해야 함.</td></tr>
<tr><td>증빙서류</td><td colspan="3">□ 증빙서류
○ 필수서류: (모두제출)
① 취업일자를 확인 할 수 있는 문서(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취업증명서 등)
② 3개월(또는 6개월) 연속 월 급여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액(878,020원)이상 급여를 확인 할 수 있는 문서(취업기간 내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등)
③ 고용보험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고용보험득실확인서)
※ 필수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대체서류로 제출 가능함.

○ 대체서류
- 단, 안내서 내 〔양식-1〕을 이용하여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반드시 표기
② 취업일과 퇴사일 또는 취업일과 서류발급일이 반드시 명확하게 표기
③ 월급여가 반드시 명확하게 표기
④ 대표자 직인 반드시 표기</td></tr>
<tr><td>평가방법
(산식)</td><td colspan="3">① 〔취업성공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 참여자수(15년, 14년 유지자수)/ 취업성공자수(15년, 14년 성공자수)〕
② 〔취업성공자 중 6개월 유지자수/취업성공자 중 3개월 유지자수〕
예시
<table><tr><td rowspan="3">A지역자활센터</td><td>14년 15년 취업성공자</td><td>10명</td></tr><tr><td>14년 15년 취업성공자 중 3개월 유지자</td><td>6명</td></tr><tr><td>14년 15년 취업성공자 중 6개월 유지자</td><td>2명</td></tr></table>☞ 이 경우 A지역자활센터의 취업유지율은?
① $\frac{6}{10}*100$=60%, ② $\frac{2}{6}*100$=33.3%</td></tr>
<tr><td>비고</td><td colspan="3">산식 ①은 4점범위내에서 구간을 설정할 예정이며, 산식 ②는 2점범위내에서 구간설정예정</td></tr>
</table>

2 사업단 운영 』

<table>
<tr><td>평가지표</td><td>(시장진입형사업단)
1인당 연평균 수익금</td><td>평가점수</td><td>2점</td></tr>
<tr><td>평가목표</td><td colspan="3">시장진입형 사업단의 연평균 수익금을 검토</td></tr>
<tr><td>평가대상자</td><td colspan="3">평가대상기간(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활근로사업단 중 시장진입형 사업단</td></tr>
<tr><td>평가내용</td><td colspan="3">□ 시장진입형사업단 1인당 연평균 수익금
수익금: 매출액 정산액

□ 시장진입형사업단 1인당 연평균 수익금 인정기준
① 제출한 증빙서류와 성과시스템과의 값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증빙서류 기준으로 인정
② 평가대상기간(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에 해당되는 자활근로사업단을 모두 대입하여 계산
③ 수익금을 발생하지 않은 사업단도 사업기간으로 인정하여, 연평균 수익금 산정에 취함
④ 수익금은 분기별로 계산(자활사업안내와 동일)
⑤ 평가대상 기간내에 사업단 유형(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을 변경한 경우에는 평가기간동안의 사업유지기간을 계산하여 입력, 수익금은 사업유형별로 유지된 기간(월)과 참여자수를 반영함</td></tr>
<tr><td>증빙서류</td><td colspan="3">□ 증빙서류
○ 필수서류: 수익금 분기 최종보고서류(자활사업안내P132 양식사용 권장)
※ 필수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대체서류로 제출하여도 가능
○ 대체서류: 수익금 월 최종보고서류</td></tr>
<tr><td>평가방법
(산식)</td><td colspan="3">전체사업단 총수익금의 합/ 전체사업단 급여수령자수

예시
A지역자활센터의 시장진입형사업단 1인당 연평균 수익금?
(단위:만원/명)
<table>
<tr><td colspan="2" rowspan="2">사업단</td><td colspan="3">1분기</td><td colspan="3">2분기</td><td colspan="3">3분기</td><td colspan="3">4분기</td></tr>
<tr><td>1월</td><td>2월</td><td>3월</td><td>4월</td><td>5월</td><td>6월</td><td>7월</td><td>8월</td><td>9월</td><td>10월</td><td>11월</td><td>12월</td></tr>
<tr><td rowspan="2">○○</td><td>수익</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r>
<tr><td>수령자</td><td>3</td><td>2</td><td>2</td><td>2</td><td>3</td><td>3</td><td>3</td><td>3</td><td>3</td><td>3</td><td>3</td><td>3</td></tr>
<tr><td rowspan="2">★★</td><td>수익</td><td>200</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r>
<tr><td>수령자</td><td>3</td><td>4</td><td>4</td><td>4</td><td>4</td><td>4</td><td>4</td><td>4</td><td>4</td><td>4</td><td>4</td><td>4</td></tr>
</table>
➡○○사업단: 총수익금=1200만원, 총급여수령자수=33명
★★사업단: 총수익금=1300만원, 총급여수령자수=47명
☞ 따라서 A지역자활센터의 연평균 수익금은 ? $\frac{2500}{80} = 31.25$만원</td></tr>
<tr><td>비고</td><td colspan="3"></td></tr>
</table>

<table>
<tr><td>평가지표</td><td>(시장진입형사업단)
1인당 평균 매출액</td><td>평가점수</td><td>3점</td></tr>
<tr><td>평가목표</td><td colspan="3">시장진입형 사업단의 월평균 매출액을 검토</td></tr>
<tr><td>평가대상자</td><td colspan="3">평가대상기간(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활근로사업단 중 시장진입형 사업단</td></tr>
<tr><td>평가내용</td><td colspan="3">□ 시장진입형사업단 1인당 월평균 매출액
매출액: 사업실시결과 발생한 매출의 총액

□ 시장진입형사업단 1인당 월평균 매출액 인정기준
① 제출한 증빙서류와 성과시스템과의 값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증빙서류 기준으로 인정
② 평가대상기간(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에 해당되는 자활근로사업단을 모두 대입하여 계산
③ 매출액을 발생하지 않은 사업단도 사업기간으로 인정하여, 연평균 매출액 산정에 취함
④ 매출액을 카드대금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인정(지자체 수익금 및 매출액 보고자료와 동일하게 적용)
⑤ 평가대상 기간내에 사업단 유형(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을 변경한 경우에는 평가기간동안의 사업유지기간을 계산하여 입력, 매출액은 사업유형별로 유지된 기간(월)과 참여자수를 반영함</td></tr>
<tr><td>증빙서류</td><td colspan="3">□ 증빙서류
○ 필수서류: 매출액 월 최종보고서류(자활사업안내P132 양식사용 권장)
<u>※ 필수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대체서류로 제출하여도 가능</u>
○ 대체서류: 매출액 분기 최종보고서류</td></tr>
<tr><td>평가방법
(산식)</td><td colspan="3">전체사업단 총매출액의 합/ 전체사업단 급여수령자수

예시
A 지역자활센터의 시장진입형사업단 1인당 월평균 매출액?
(단위:만원/명)
<table>
<tr><td colspan="2">사업단</td><td>1월</td><td>2월</td><td>3월</td><td>4월</td><td>5월</td><td>6월</td><td>7월</td><td>8월</td><td>9월</td><td>10월</td><td>11월</td><td>12월</td></tr>
<tr><td rowspan="2">○○</td><td>매출</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r>
<tr><td>수령자</td><td>3</td><td>2</td><td>3</td><td>3</td><td>2</td><td>2</td><td>2</td><td>2</td><td>2</td><td>2</td><td>2</td><td>2</td></tr>
<tr><td rowspan="2">★★</td><td>매출</td><td></td><td></td><td></td><td></td><td></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r>
<tr><td>수령자</td><td></td><td></td><td></td><td></td><td></td><td>2</td><td>2</td><td>2</td><td>2</td><td>2</td><td>2</td><td>2</td></tr>
</table>
➡○○사업단: 총매출액=1200만원, 총급여수령자수=27명
★★사업단: 총매출액=700만원, 총급여수령자수=14명
☞ 따라서 A지역자활센터의 연평균 매출은 ? $\frac{1900}{41} = 46.34$만원</td></tr>
<tr><td>비고</td><td colspan="3"></td></tr>
</table>

<table>
<tr><td>평가지표</td><td>(사회서비스형사업단)
이용자 전체 만족도</td><td>평가점수</td><td>3점</td></tr>
<tr><td>평가목표</td><td colspan="3">사회서비스형사업단 이용자 및 수혜자의 전체 만족도를 검토</td></tr>
<tr><td>평가대상자</td><td colspan="3">사회서비스형사업단의 서비스나 재화를 이용한 전체 수혜자</td></tr>
<tr><td>평가내용</td><td colspan="3">□ 사회서비스형사업단 이용자 전체 만족도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사업단에서 제공한 재화(상품)나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로 지역자활센터에서 모든 이용자의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면(최소입력인원 5명기준) 중앙자활센터에서 랜덤으로 추출하여 전화조사 후 결과를 가지고 평가할 예정
<u>※단, 사업단 이용자가 5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단에서 추가로 이용자를 입력하여도 됨</u>
<table><tr><td>예시</td><td>★★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한 사회서비스 사업단이 총 4개일 경우 이용자 만족도 조사 입력최소인원은?

- 4개의 사업단 * 5명 = 20명의 총원을 입력하여야 함.</td></tr></table></td></tr>
<tr><td>증빙서류</td><td colspan="3">□ 증빙서류
○ 없음</td></tr>
<tr><td>평가방법
(산식)</td><td colspan="3">사업단 (상품, 서비스)이용자 랜덤추출조사</td></tr>
<tr><td>비고</td><td colspan="3">※시범(Pilot)자활근로사업단 은 평가대상자 아님</td></tr>
</table>

평가지표	(사회서비스형사업단) 1인당 연평균 수익금	평가점수	2점
평가목표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의 연평균 수익금을 검토		
평가대상자	평가대상기간(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활근로사업단 중 사회서비스형사업단 < 수익금&매출액 평가시 제외되는 사업단(2015 자활근로사업안내 p102) > ① 간병서비스 사업단 ② 장애인통합보조교육 사업단 ③ 농촌형 지역자활센터의 정부양곡배송 사업단 ④ 시군구의 결정으로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단(지자체 승인공문 첨부) ※ 단, 상위 사업단을 제외한 수익형사업단을 비수익형으로 입력하였을 경우에는 확인 후 임의로 변환가능		
평가내용	□ 사회서비스형사업단 1인당 연평균 수익금 수익금: 매출액 정산액 □ 사회서비스형사업단 1인당 연평균 수익금 인정기준 ① 제출한 증빙서류와 성과시스템과의 값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증빙서류 기준으로 인정 ② 평가대상기간(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에 해당되는 자활근로사업단을 모두 대입하여 계산 ③ 수익금을 발생하지 않은 사업단도 사업기간으로 인정하여, 연평균 수익금 산정에 취함 ④ 수익금은 분기별로 계산(자활사업안내와 동일) ⑤ 평가대상 기간내에 사업단 유형(사회서비스형⇄시장진입형)을 변경한 경우에는 평가기간동안의 사업유지기간을 계산하여 입력, 수익금은 사업유형별로 유지된 기간(월)과 참여자수를 반영함		
증빙서류	□ 증빙서류 ○ 필수서류: 수익금 분기 최종보고서류(자활사업안내P132 양식사용 권장) ※ 필수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대체서류로 제출하여도 가능 ○ 대체서류: 수익금 월 최종보고서류		
평가방법 (산식)	**전체사업단 총수익금의 합/ 전체사업단 급여수령자수**		

예시

A지역자활센터의 시장진입형사업단 1인당 연평균 수익금?

(단위:만원/명)

사업단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수익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수령자	3	2	2	2	3	3	3	3	3	3	3	3
★★	수익	2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수령자	3	4	4	4	4	4	4	4	4	4	4	4

➡○○사업단: 총수익금=1200만원, 총급여수령자수=33명

★★사업단: 총수익금=1300만원, 총급여수령자수=47명

☞ 따라서 A지역자활센터의 연평균 수익금은 ? $\frac{2500}{80} = 31.25$만원

비고	※시범(Pilot)자활근로사업단 은 평가대상자 아님

<table>
<tr><td>평가지표</td><td>(사회서비스형사업단)
1인당 월평균 매출액</td><td>평가점수</td><td>2점</td></tr>
<tr><td>평가목표</td><td colspan="3">사회서비스형 사업단의 월평균 매출액을 검토</td></tr>
<tr><td>평가대상자</td><td colspan="3">평가대상기간(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활근로사업단 중 사회서비스형사업단
< 수익금&매출액 평가시 제외되는 사업단(2015 자활근로사업안내 p102) >
① 간병서비스 사업단
② 장애인통합보조교육 사업단
③ 농촌형 지역자활센터의 정부양곡배송 사업단
④ 시군구의 결정으로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단(지자체 승인공문 첨부)

※ 단, 상위 사업단을 제외한 수익형사업단을 비수익형으로 입력하였을 경우에는 확인 후 임의로 변환가능</td></tr>
<tr><td>평가내용</td><td colspan="3">□ 사회서비스형사업단 1인당 월평균 매출액
매출액: 사업실시결과 발생한 매출의 총액

□ 사회서비스형사업단 1인당 연평균 수익금 인정기준
① 제출한 증빙서류와 성과시스템과의 값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증빙서류 기준으로 인정
② 평가대상기간(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에 해당되는 자활근로사업단을 모두 대입하여 계산
③ 매출액을 발생하지 않은 사업단도 사업기간으로 인정하여, 연평균 매출액 산정에 취함
④ 매출액을 카드대금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인정(지자체 수익금 및 매출액 보고자료와 동일하게 적용)
⑤ 평가대상 기간내에 사업단 유형(사회서비스형⇄시장진입형)을 변경한 경우에는 평가기간동안의 사업유지기간을 계산하여 입력, 매출액은 사업유형별로 유지된 기간(월)과 참여자수를 반영함</td></tr>
<tr><td>증빙서류</td><td colspan="3">□ 증빙서류
○ 필수서류: 매출액 월 최종보고서류(자활사업안내P132 양식사용 권장)
<u>※ 필수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대체서류로 제출하여도 가능</u>
○ 대체서류: 매출액 분기 최종보고서류</td></tr>
<tr><td>평가방법
(산식)</td><td colspan="3">전체사업단 총매출액의 합/ 전체사업단 급여수령자수
예시
A 지역자활센터의 시장진입형사업단 1인당 월평균 매출액?
(단위:만원/명)
<table>
<tr><td colspan="2">사업단</td><td>1월</td><td>2월</td><td>3월</td><td>4월</td><td>5월</td><td>6월</td><td>7월</td><td>8월</td><td>9월</td><td>10월</td><td>11월</td><td>12월</td></tr>
<tr><td rowspan="2">○○</td><td>매출</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r>
<tr><td>수령자</td><td>3</td><td>2</td><td>3</td><td>3</td><td>2</td><td>2</td><td>2</td><td>2</td><td>2</td><td>2</td><td>2</td><td>2</td></tr>
<tr><td rowspan="2">★★</td><td>매출</td><td></td><td></td><td></td><td></td><td></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r>
<tr><td>수령자</td><td></td><td></td><td></td><td></td><td></td><td>2</td><td>2</td><td>2</td><td>2</td><td>2</td><td>2</td><td>2</td></tr>
</table>
➡○○사업단: 총매출액=1200만원, 총급여수령자수=27명
★★사업단: 총매출액=700만원, 총급여수령자수=14명
☞ 따라서 A지역자활센터의 연평균 매출은 ? $\frac{1900}{41} = 46.34$만원</td></tr>
<tr><td>비고</td><td colspan="3">※시범(Pilot)자활근로사업단 은 평가대상자 아님</td></tr>
</table>

<table>
<tr><td>평가지표</td><td>참여자인적자본 향상지원</td><td>평가점수</td><td>6점(가산점 2점)</td></tr>
<tr><td>평가목표</td><td colspan="3">참여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격증 및 학위취득의 성과 여부검토</td></tr>
<tr><td>평가대상자</td><td colspan="3">2015년 자활근로사업단(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시범(Pilot)자활근로사업단)참여한 참여자(실누계인원, 중복자 제외)중 급여를 1회 이상 수령한 참여자</td></tr>
<tr><td>평가내용</td><td colspan="3">□ 전문자격
전문자격은 국가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q-net.or.kr)에 등록되거나 국가자격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인정함

□ 민간자격
민간자격은 국가외 지자체, 개인·법인 단체가 신설하여 관리·운영 및 발급하는 자격을 말하며, 민간자격 정보서비스(http://www.pqi.or.kr) 에 공인되거나 등록된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인정함

□ 학위취득
교육부인정 학위 및 상위학력(초, 중, 고 검정고시 포함)을 취득한 경우 인정함</td></tr>
<tr><td>증빙서류</td><td colspan="3">□ 증빙서류
○ 필수서류: 자격증, 합격증, 학위취득증(선택제출)
<u>※ 필수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대체서류로 제출가능함</u>
○ 대체서류: 자격증취득예정증명서,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 증빙서류 필수포함사항
① 자격증 사본에는 취득일, 취득자 이름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
② 학위취득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등 학위취득예정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td></tr>
<tr><td>평가방법
(산식)</td><td colspan="3">①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중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학위를 취득한 건수/자격증 및 학위취득율 평가대상자 〕
② 〔전문자격증 취득건수/ 자격증(전문,민간)취득건수〕

예시
자격증 및 학위득율 평가대상자: 50명
전문자격증 취득건수: 10건
민간자격증 취득건수: 30건
상위학위 취득건수: 5건

☞ 이 경우 A지역자활센터의 취업유지율은?
① $\frac{45}{50}*100$=90%, ② $\frac{10}{40}*100$=25%</td></tr>
<tr><td>비고</td><td colspan="3">산식 ①은 6점범위내에서 구간을 설정할 예정이며, 산식 ②는 2점범위내에서 구간설정예정
※1인이 다건의 자격증 및 학위를 취득한 경우도 모두 인정</td></tr>
</table>

3 자 활 기 업

평가지표	자활기업 참여자 1인당 월평균 급여액	평가점수	4점
평가목표	자활기업 참여자의 1인당 월평균 급여액을 검토		
평가대상자	5년(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이내 자활기업 참여자 중에서 2015년 급여를 1회 이상 수령한 참여자 ※ 최저임금이하 일반인 참여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평가내용	□ 자활기업 참여자 1인당 월평균 급여액 자활기업 참여자 1인당 월평균 급여액(공제전)으로 각 자활기업의 매월 참여인원 급여의 평균값을 구하고 이를 사업기간 동안의 평균값으로 최종 산출 □ 자활기업 참여자 1인당 월평균 급여액 인정기준 ① 센터에 복수의 자활기업이 있으므로 각 자활기업의 1인당 월평균 급여의 합을 자활기업 수로 나눈 값이 센터의 1인당 월평균 급여액으로 산출함 ② 자활기업 인건비는 사회보험(자기부담금만포함), 퇴직금(실제 퇴직한자에게 지급된 금액에 한하며 퇴직적립금은 제외), 성과금, 상여금, 각종보상금 포함 ③ 일반참여자는 최저임금 월(1,166,220원)이상자만 포함 ④ 자활기업 수에 포함된 한시적 인건비를 지원받는 참여자 중 한시적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 자체 수익에서 한시적 인건비 지원 참여자에게 추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인건비 총액에 포함		
증빙서류	□ 증빙서류(선택제출) ○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 한시적인건비지원금액 대상자 별도표시		
평가방법 (산식)	∑(자활기업월인건비총액/ 월참여자수)/사업기간월수		
비고			

<table>
<tr><td>평가지표</td><td>자활기업 사회적 기여율</td><td>평가점수</td><td>2점</td></tr>
<tr><td>평가목표</td><td colspan="3">자활기업이 취약계층의 고용을 얼마나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검토</td></tr>
<tr><td>평가대상자</td><td colspan="3">3년(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이내 자활기업 중 2015년에 1일 이상 운영한 자활기업</td></tr>
<tr><td>평가내용</td><td colspan="3">□ 자활기업 사회적 기여율
3년이내 자활기업의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에 대한 2015년 근속년수율로 자활기업이 취약계층의 고용을 얼마나 제공하였는지를 확인</td></tr>
<tr><td>증빙서류</td><td colspan="3">□ 증빙서류
○ 필수서류: (모두제출)
① 사회복지급여통지서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자활기업 최초참여당시 차상위계층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제출(ex. 차상위계층증명서*))
* 차상위계층증명서는 아래와 같은 것을 증빙서류로 인정함.
- 한부모가족 증명서: 읍면동 주민자체센터 발급
-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읍면동 주민자체센터 발급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
② 재직증명서
③ 자활기업 요건충족 신고서류: 자활기업 구성원 명단 및 수급유형이 확인 가능한 서류(ex. 자활기업 설립당시 사업계획서, 지자체 승인공문 등)

* 분자-사회복지급여통지서, 재직증명서(자활기업 입사일 반드시 표기)
* 분모-자활기업 요건충족 신고서류(반드시 자활기업 구성원 명단 및 수급유형 확인이 가능해야 함)</td></tr>
<tr><td>평가방법
(산식)</td><td colspan="3">2015년 12월 31일 자활기업 참여자 중 자활기업 최초 참여시점의 취약계층 인원
/ 자활기업 최초인정시점의 취약계층 인원수

예시
A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기업 사회적 기여율은?
<table>
<tr><th>참여자</th><th>a 자활기업인정일
(2013년 2월 22일)</th><th>자활기업참여일</th><th>자활기업 (최초)
참여시점 수급유형</th><th>2015년 12월 31일
기준 수급유형</th></tr>
<tr><td>김**</td><td>미참여</td><td>2015년 1월 15일</td><td>수급자</td><td>일반인</td></tr>
<tr><td>정**</td><td>미참여</td><td>2014년 5월 10일</td><td>차상위</td><td>차상위</td></tr>
<tr><td>신**</td><td>미참여</td><td>2015년 4월 7일</td><td>수급자</td><td>일반인</td></tr>
<tr><td>박**</td><td>미참여</td><td>2015년 7월 1일</td><td>수급자</td><td>일반인</td></tr>
<tr><td>이**</td><td>참여</td><td>2013년 2월 22일</td><td>수급자</td><td>수급자</td></tr>
<tr><td>홍**</td><td>참여</td><td>2013년 2월 22일</td><td>차상위</td><td>2014년 11월 퇴사</td></tr>
</table>
➔ 정답: $\frac{5}{2}$
해설: 분모- 자활기업 최초인정시점 취약계층 인원 2명(이**,홍**)2명
분자- 자활기업 (최초)참여시점 취약계층(김**,정**,신**,박**,이**) 5명</td></tr>
<tr><td>비고</td><td colspan="3">※ 단,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된 자활기업의 경우 폐업시점기준의 자활기업 참여자 중 자활기업 최초 참여시점의 취약계층 인원을 계산함</td></tr>
</table>

평가지표	자활기업 일자리 증가율	평가점수	2점
평가목표	자활기업의 추가고용 증가율을 여부를 검토		
평가대상자	3년(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이내의 자활기업		
평가내용	□ 자활기업 일자리 증가율 자활기업의 추가 고용 증가율을 검토함으로 자활기업이 안정적인 일자리 증가를 위해 노력하였는지 여부를 전년대비 확인		
증빙서류	□ 증빙서류 ○ 필수서류: ① 2015년 1월~12월 자활기업 참여자 급여대장(급여명세서) ※ 필수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대체서류로 제출 가능함. ○ 대체서류: ① 자활기업 참여자 고용계약서(월평균급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평가방법 (산식)

(15년 연평균 최저임금이상 참여자수/15년 자활기업 참여자수)*100

예시

A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기업 일자리 증가율?

✪ 2015년 자활기업 참여자 급여내역

(단위: 만원)

참여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홍**	200	1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191.6
임**	-	-	-	-	-	-	100	150	100	150	100	100	116.6
장**	-	-	-	-	-	-	-	-	-	-	-	200	200
김**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정답: $\frac{3}{4}*100$=75%

해설: 분모- 15년 자활기업 참여자수 4명

분자- 15년 연평균 최저임금이상 참여자수 3명(홍**,임**,장**)

※ 한시적인건비지원 참여자는 한시적인건비 포함 연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자만 포함됨.

비고

평가지표	자활기업 사업 지속률(신규)	평가점수	3점
평가목표	자활기업의 지속을 위한 센터 및 기업의 노력에 대한 평가		
평가대상자	5년(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이내의 자활기업		
평가내용	□ 자활기업 사업 지속률 지역자활센터에서 안정된 자활기업을 창업시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증빙서류	□ 증빙서류 ○ 필수서류: (모두제출) ① 자활기업 사업자 등록증(5년이내 창업된 자활기업임이 확인되어야 함) ② 자활기업 임금 대장(2015년 12월 31일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활기업에 한함)		
평가방법 (산식)	2015년 12월 31일 기준 생존여부 /5년 이내의 창업된 자활기업개수		
비고			

4 참여자 관리

평가지표	(참여자) 직무교육이수율	평가점수	6점
평가목표	참여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자활센터에서 다양한 교육(직무) 실시여부 검토		
평가대상자	2015년 자활근로사업단(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시범(Pilot)자활근로사업단)참여한 참여자(실누계인원, 중복자 제외)중 급여를 1회 이상 수령한 참여자, 3년(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이내 자활기업 참여자 중에서 2015년 급여를 1회이상 수령한 참여자		
평가내용	□ 직무교육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참여자의 직무 및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업단 및 자활기업과 연관된 교육 □ 직무교육 인정범위 ① 중앙/광역자활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지부, 가사간병교육센터가 주최하거나 주관한 교육 ②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실시한 교육 ③ 그 외 국가가 인정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이수한 교육 ④ 기관 자체교육은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한 경우만 인정(외부전문강사 이력서 또는 프로필 첨부) ※ 단, 사업단 참여자: 직무교육 연 2회, 총 8시간 이상 이수한 인원만 인정 ※ 단, 자활기업 참여자: 직무교육 연 1회, 총 4시간 이상 이수한 인원만 인정 □ 직무교육 제외범위 ① 법정의무교육(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퇴직연금운영상황 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안전·보건교육 등), 온라인교육의 경우 제외 ② 단순한 정책소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신용관리안내, 자활사업입문교육 등), 사업기준안내(취성패, 희망리본, 희망키움통장안내 등)은 제외 ③ 참여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없는 교육은 제외 ④ 근로의욕증진, 근골격계 예방교육, 심리관련교육(음악치료, 연극치료)등 제외 ⑤ 해당사업 평가회의, 해외연수 등 제외 ⑥ 견학프로그램에 대하여 서류 불충분(방문기관 내용 미첨부)할 경우는 제외 ⑦ 소양교육에 이중으로 입력한 경우 제외		
증빙서류	□ 증빙서류 ○ 필수서류: **① 자격증, 수료증(선택제출): 자격증과 수료증에는 이수시간 및 교육내용, 이름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참석확인공문(출석부:자필서명)이나 내부결과보고서로도 대체가능함.** **② 교육지출결과보고서: 2015년 지출된 교육활동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로 교육비 지급내역서 강사료 지출 명세서, 내부결과보고결제서류 등** □ 증빙서류 필수포함사항 ①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한 경우는 반드시 외부전문강사 이력서나 프로필을 첨부해야 함 ② 자격증 및 수료증에는 교육참석일자 및 이수시간이 반드시 확인가능해야 함 ③ 출석부를 제출할 경우에는 출석부에 자필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참석확인공		

	문 및 내부결제문서가 함께 증빙되어야 함
평가방법 (산식)	① [(2015년 지출교육활동비/ 직무교육이수율 평가대상자수)] ② [(자활근로사업단 직무교육 연 2회, 총 8시간 이상 이수한 인원, 자활기업 참여자 직무교육 연 1회, 총 4시간 이상 이수한 인원/직무교육이수율 평가대상자수)] ※ 단, 자활근로사업 참여기간이 180일 미만의 경우 참여자는 50%만 적용(연 1회 총 4시간이수)
비고	산식 ①은 2점범위내에서 구간을 설정할 예정이며, 산식 ②는 4점범위내에서 구간설정예정 ※ 직무교육은 교육의 주관과 주최가 다른 교육일 때 1일 2회까지 인정가능 ※ 참여자 중 참여변동(자활근로사업단→자활기업) 이력이 있는 경우 더 오랜기간 참여한 자활근로사업단 또는 자활기업을 소속으로 계산 ※ 지출교육활동비는 여비는 제외하며, 교육실비만 인정가능

평가지표	(참여자) 소양교육이수율	평가점수	3점
평가목표	참여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자활센터에서 다양한 교육(소양) 실시여부 검토		
평가대상자	2015년 자활근로사업단(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시범(Pilot)자활근로사업단)참여한 참여자(실누계인원, 중복자 제외)중 급여를 1회 이상 수령한 참여자, 3년(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이내 자활기업 참여자 중에서 2015년 급여를 1회이상 수령한 참여자		
평가내용	□ 소양교육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참여자에 대한 인문학교육, 자존감향상교육, **인권교육** 등과 같이 직무교육에 포함되지 않는 일체의 교육을 모두포함 □ 소양교육 인정범위 ① 중앙/광역자활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지부, 가사간병교육센터가 주최하거나 주관한 교육 ②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실시한 교육 ③ 그 외 국가가 인정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이수한 교육 ④ 기관 자체교육은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한 경우만 인정(외부전문강사 이력서 또는 프로필 첨부) ⑤ 온라인교육의 경우 50%만 인정 ※ 단, 사업단 참여자: 소양교육 연 4회, 총 8시간 이상 이수한 인원만 인정 ※ 단, 자활기업 참여자: 소양교육 연 2회, 총 4시간 이상 이수한 인원만 인정 □ 소양교육 제외범위 ① 법정의무교육 모두 제외 ② 단순지자체 및 법인행사(체육대회, 단합대회)는 제외 ③ 교육이 없는 단순방문 프로그램 형식(제주도 방문 등)은 제외 ④ 직무교육에 이중으로 입력한 경우 제외		
증빙서류	□ 증빙서류 ○ 필수서류: 자격증, 수료증(선택제출) ※ 필수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대체서류로 제출가능함 ○ 대체서류: 참석확인공문(출석부첨부), 내부결제문서(출석부첨부) ※ 대체서류를 제출할 시에는 출석부(자필서명)를 반드시 첨부할 것 □ 증빙서류 필수포함사항 ①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한 경우는 반드시 외부전문강사 이력서나 프로필을 첨부해야 함 ② 자격증 및 수료증에는 교육참석일자 및 이수시간이 반드시 확인가능해야 함 ③ 출석부를 제출할 경우에는 참석확인공문 및 내부결제문서가 함께 증빙되어야 함 ④ 출석부에는 자필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함		
평가방법 (산식)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소양교육 연 4회, 총 8시간 이상 이수한 인원, 자활기업 참여자 중 소양교육 연 2회, 총 4시간 이상 이수한 인원/ 소양교육이수율 평가대상자수 ※ 단, 참여기간이 180일 미만의 경우 참여자는 50%만 적용(연 2회 총 4시간이수)		
비고	※ 소양교육은 교육의 주관과 주최가 다른 교육일 때 1일 2회까지 인정가능 ※ 참여자 중 사업단 참여변동 이력이 있는 경우 더 오랜기간 참여한 사업단을 소속사업단으로 계산		

평가지표	사례관리 체계화 수준	평가점수	5점
평가목표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위한 평가방식 도입		
평가대상자	자활근로사업단(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시범(Pilot)자활근로사업단)참여자를 대상		
평가내용	□ 사례회의 사례관리 체크리스트의 작성을 통하여 각 영역별 사례관리 체계화수준을 정립하고자 함.		
증빙서류	□ 증빙서류 ○ 필수서류: (모두제출) ① [양식 4] 사례관리 체크리스트를 작성후에 해당여부에 “예”라고 표기한 영역에 대하여는 평가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평가방법 (산식)	각 영역별로 달성된 점수의 합산		
비고	※2015년 기간중 해당사항을 해당여부에 표기		

5 센터운영

평가지표	자산형성지원(신규)	평가점수	3점
평가목표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지원정도 검토		
평가대상자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에 성실참여(매월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 자로 내일키움통장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평가내용	□ 자산형성지원 ① 내일키움통장 유지율: 내일키움통장에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중에서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의 비율 ② 내일키움통장 지급해지율: 내일키움통장 해지자중 지급해지자의 비율		
증빙서류	□ 증빙서류 ○ 필수서류: ① 하나은행 시스템관련 서류 및 내부결제 문서		
평가방법 (산식)			
비고			

평가지표	종사자 직무교육	평가점수	2점
평가목표	종사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검토		
평가대상자	종사자의 대상은 90일이상(3개월) 근무한자로 센터장, 기관운영비를 통해 지원되는 종사자(계약직 포함), 희망키움통장전담관리자, Gateway사업단 전담관리자, 사례관리 전담관리자, 청소년자활지원 프로그램의 전담관리자 ※ 종사자 입·퇴자사 발생시 교육이수시간이 신규종사자로 승계되지 않음 ※ 종사자가 평가기간 동안 임신, 병가 등의 휴직은 근무기간에서 제외됨 ※ 순환보직자의 경우 순환보직기간 제외 **※ 사망이나 정년퇴직으로 인한 근로중단은 증빙서류 제출후 평가대상에서 제외**		
평가내용	□ 직무교육 지역자활센터 직무에 필요한 전반적인 각종교육 □ 직무교육 인정범위 **① 필수교육: 중앙/광역지역자활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자활연수원에서 주관이나 주최한 모든 교육 및 복지부에서 지정한 교육** **② 선택교육: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실시한 교육, 국가가 인정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이수한 교육** ※ 기관 자체교육은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한 경우만 인정(외부전문강사 이력서 또는 프로필 첨부) ※ 유·무료 사이버 교육은 50%만 인정 □ 직무교육 제외범위 ① 법정의무교육(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퇴직연금운영상황 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안전·보건교육 등), 사회복지사보수교육 제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에서 진행된 특화교육 중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으로 인정받은 교육은 제외됨 ② 지자체 보조사업자 의무교육, 조직 관리 참여자 의무교육 제외 ③ 회의 및 간담회, 해외연수 등은 제외 ④ 대학학위과정, 책을 우편으로 받아서 사이버시험 후 수료하는 교육 등 제외		
증빙서류	□ 증빙서류 ○ 필수서류: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수료증, 참석확인 공문 등(참석자 이름, 교육시간, 교육내용 등이 반드시 확인되어야함)		
평가방법 (산식)	총 40시간 이상 교육이수 종사자수/종사자 직무교육 평가대상자		
비고	**수료증에 명시된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수료증에 교육시간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는 교육훈련 참여시간 기준은 1일 최대 8시간, 반일 교육은 4시간까지만 인정함.**		

평가지표	종사자 복지지원(복리후생)	평가점수	2점
평가목표	센터 종사자의 다양한 복지지원(복리후생)을 통하여 직장생활 만족 및 향상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는지 여부를 검토		
평가대상자	센터장, 기관운영비를 통해 지원되는 종사자(계약직 포함), 희망키움통장전담관리자, Gateway사업단 전담관리자, 사례관리전담관리자, 청소년자활지원 프로그램의 전담관리자		
평가내용	□ 복리후생의 범위 ① 외부전문 연수, 학회, 공청회 등 의 참여 ② 외부후원 등을 포함한 종사자 금전적 지원 ③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별도 예산 지원확보를 통한 개선 □ 종사자 복지지원(복리후생) ① 복리후생(포상제도) 규정을 갖추고 있다. ② 복리후생(포상제도)을 지원한 경우가 있다. ③ 복리후생(포상제도)을 지원한 금액이 있다.		
증빙서류	□ 증빙서류 ○ 필수서류: ① 복리후생(포상제도) 규정 ② 복리후생(포상제도)를 지원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내부, 외부 결제 결과보고문서) ③ 복리후생(포상제도)를 지원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내부, 외부 결제 결과보고문서)		
평가방법 (산식)	종사자 복지지원(복리후생)에 대한 3가지 평가내용 달성여부로 점수부여		
비고			

평가지표	홍보	평가점수	2점
평가목표	지역사회주민에게 센터 및 사업을 홍보하고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는지 여부를 검토		
평가대상자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 자활기업(2013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까지 인정된 자활기업)에 대하여 2015년에 이루어진 홍보		
평가내용	□ 홍보 ① 언론홍보: 방송, 신문, 잡지 등에 해당하며 이를 스크랩하여 제출한 자료 ※ 같은 주제의 동일행사에 대하여 언론홍보의 경우 다건으로 인정함 ② 홍보자료: - 소식지, 웹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식지나 웹진을 **직접** 발간하였을 경우 인정 - 홍보물(리플렛, 가이드북): 평가대상기간동안에 연 1회이상 **직접** 제작하였을 경우 인정		
증빙서류	□ 증빙서류(모두제출) ○ 필수서류 ① 언론홍보: 방송, 신문, 잡지 등의 스크랩자료 ② 홍보자료: - 소식지, 웹진, 홍보물: 내부결제 결과보고문서(계획보고서는 인정안됨) ※ 모든 홍보자료는 2015년에 홍보 된 것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평가방법 (산식)	언론홍보건수에 대한 점수+ 홍보자료에 달성여부에 대한 점수		
비고			

평가지표	종사자 근속일수	평가점수	2점
평가목표	종사자의 근속률을 통해 센터가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관리를 위해 노력 하였는지 여부를 검토		
평가대상자	센터장, 기관운영비를 통해 지원되는 종사자(계약직 포함), 희망키움통장전담관리자, Gateway사업단 전담관리자, 사례관리전담관리자, 청소년자활지원 프로그램의 전담관리자 ※ 임신, 병가로 인한 휴직자도 모두 포함 ※ 평가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종사자는 개인별 보험료 고지(산출) 내역서 12개월분에 사유를 표기하고 센터장 도장 날인 후 제출 **※ 사망이나 정년퇴직으로 인한 근로중단은 증빙서류 제출후 평가대상에서 제외**		
평가내용	□ 종사자 근속년수 ① 2015년 종사자의 근속비율로 2015년 종사자수(1일이상 근무자)대비 2015년 종사자 총근속일(주말휴일포함)수임 ② 법인내 순환보직으로 지역자활센터내에 발령되어 근무하였을 경우 법인내 근무기간을 지역자활센터 계속근무로 인정 ③ 출산휴가(3개월 계약직), 육아휴직 대체인력은 평가에서 제외됨 ④ 인사이동(ex. 계약직⇒정규직)의 경우 휴일이 없을 경우 계속근무로 인정		
증빙서류	□ 증빙서류 ○ 필수서류: ① 개인별 보험료 고지(산출)내역서 12개월분 ※ 개인별 보험료 고지내역서는 해당지역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EDI서비스(http://edi.nhis.or.kr)를 통해서 발급 가능함 ② 인사원칙증빙서류(순환보직 해당자만 첨부)		
평가방법 (산식)	$\frac{\text{2015년종사자총근속일수(주말휴일포함)}}{\text{2015년종사자수(1일이상근무자)}}$		
비고			

평가지표	통합 수입지출 예산서 및 결산서작성	평가점수	3점
평가내용	지역자활센터의 수입지출 예산서 및 결산서에 대한 투명서 확보를 위한 서류제출		
증빙서류	□ 증빙서류 ○ 필수서류: ① 2015년 자활사업 추진현황 작성 후 평가서류와 함께 제본 후 제출 ② 2015년 자활사업 추진현황 작성 후(엑셀) 메일(sparrow20@cssf.or.kr)로 제출 ※ 엑셀파일은 중앙자활센터 홈페이지 소통마당 커뮤니티에서 다운 가능함.		
평가방법 (산식)	양식에 의거한 서류제출(제본, 메일)		
비고			

평가지표	운영위원회 심의 및 시군구보고	평가점수	3점
평가목표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에 대한 심의 및 시군구 보고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검토		
평가내용	□ 운영위원회 심의 및 시군구보고 ① 지역자활센터에 외부인사가 1인이상 참여하는 운영지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② 년 4회 이상 운영지원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는지 여부 ③ 지역자활센터 예산 편성에 대한 운영지원위원회 심의 및 시군구 보고 여부		
증빙서류	□ 증빙서류 ○ 필수서류:(모두제출) ① 운영지원위원회 구성 명단 ② 운영위원회 개최 관련 내부결과보고결제문서 ③ 운영지원위원회 개최 회의록		
평가방법 (산식)	운영위원회 심의 및 시군구보고 3가지 항목 평가내용 달성여부로 점수부여		
비고			

6 외부자원 후원

평가지표	후원실적	평가점수	2점
평가목표	재정적 후원, 물품후원을 얼마나 개발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		
평가대상자	후원금이나 후원물품		
평가내용	□ 후원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제공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을 의미함 ※ 사업추진의 명목으로 받은 후원은 후원으로 볼 수 없음 □ 후원금(품)의 종류 ① 민간단체 보조금품: 국내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품 ② 외원단체 보조금품: 외국 민간원조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품 ③ 결연후원금품: 아동·노인 등 시설거주자에 대한 결연후원금품 ④ 법인임원 후원금품: 법인 임원으로부터 받은 후원금품 및 찬조금품 ⑤ 지역사회 후원금품: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위문금품 및 후원금품 ⑥ 후원회 지원금품: 법인의 후원회로부터 받은 지원금품 ⑦ 자선모금품: 자선바자회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입금품 ⑧ 기타 후원금품: 행정기관의 시설위문금 등 후원금품 □ 후원자 구분 ① 개인 ② 영리법인: 기업 ③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등(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④ 민간단체: 비영리단체, 외국민간원조단체, 민간단체, 기타 ⑤ 국가기관: 입법기관·사법기관·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⑥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⑦ 소관법인: 해당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법인의 후원금이 전출금 형태로 시설에 전달)		
증빙서류	□ 증빙서류 ○ 필수서류: (모두제출) ① ［양식-2］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② ［양식-2］관련 증빙서류(후원관련 공문, 기부금영수증, 후원금 영수증, 수령증, 후원금 전용계좌 통장사본 등)		
평가방법 (산식)	외부자원후원(물품)건수&**후원금액**		
비고			

평가지표	지역의 사회적 공헌 건수	평가점수	3점
평가목표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2013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까지 인정된 자활기업)이 지역사회의 공헌활동을 얼마나 하였는지 여부를 검토		
평가대상자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평가내용	□ 지역의 사회적 공헌의 범위 ① 지역행사: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의 주최 및 주관으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또는 자활기업참여자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행사(예: 바자회, 캠프 등) ② 자원봉사활동: 지역의 유관기관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자활기업 참여자가 제공한 다양한 봉사활동 ③ 물품 및 금품 후원: 지역의 유관기관에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이 제공한 물품 및 금품후원(지역자활센터 종사자 개인 및 자활기업참여자 개인의 후원건은 불인정) □ 지역의 사회적 공헌 건수 ① 지역행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실시하였다. ② 자원봉사활동: 지역주민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③ 물품 및 금품 후원: 취약계층 지역주민을 위한 물품 및 후원활동을 실시하였다		
증빙서류	□ 증빙서류 ○ 필수서류: 내부결제 결과보고문서		
평가방법 (산식)	지역의 사회적 공헌건수에 대한 3가지 항목 평가내용 달성여부로 점수부여		
비고			

7 지역형별 특화사업 개발 및 발굴

평가지표	지자체(공공) 위탁사업건수	평가점수	3점
평가목표	지역자활센터나 사업단, 자활기업이 지자체나 공공 및 기타기관으로부터 얼마나 사업을 위탁받아서 운영하였는지 여부를 검토		
평가대상자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자활기업(2013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까지 인정된 자활기업)에 위탁		
평가내용	□ 공공 위탁사업의 범위(입법기관, 사법기관, 중앙행정기관*은 제외) ○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에 등록된 공공기관만 인정함. ※ 〔부록-1〕 2014년도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304개)참고 ○ 기타: 입법기관, 사법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소속기관(예. 보건소, 경찰서, 소방서,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등) *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부·처 및 청 □ 공공 위탁사업건수(공모, 또는 위탁일 기준) 지자체와 공공기관 및 기타기관이 지역자활센터 및 사업단, 자활기업(2013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까지 인정된 자활기업)에게 위탁한 사업건수 및 위탁노력건수		
증빙서류	□ 증빙서류(선택제출) ① 위탁공문 ② 위탁계약서 **③ 사업위탁을 위해서 지역자활센터가 발송한 공문** ※ 위탁공문이나 계약서상에는 사업수행일이나 위탁(계약)일이 2015년임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평가방법 (산식)	실제위탁사업건수+**위탁사업노력건수**		
비고	**※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취성패, 희망리본사업, 희망나르미사업 위탁사업건은 제외** ※ 기준일: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이내에 공모 또는 **위탁**받은사업, **2015년에 실시하는 사업**		

평가지표	민간(기업, 단체 등)외부 공모 및 위탁사업건수	평가점수	3점
평가목표	지역자활센터나 사업단, 자활기업이 민간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얼마나 사업을 위탁받아서 운영하였는지 여부를 검토		
평가대상자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자활기업(2013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까지 인정된 자활기업)에 위탁		
평가내용	□ 민간 위탁사업의 범위 ○ 영리법인: 기업 ○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등(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 민간단체: 비영리단체, 외국민간원조단체, 민간단체 기타 □ 민간 위탁사업건수(공모, 또는 위탁일 기준) 민간기관이 지역자활센터 및 사업단, 자활기업(2013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까지 인정된 자활기업)에게 위탁한 사업건수		
증빙서류	□ 증빙서류(선택제출) ① 공모지원서류 ② 채택공문 ③ 위탁공문 ④ 위탁계약서		
평가방법 (산식)	위탁받은 사업, 외부 공모에 지원한 경우는 1건으로 인정 ※ 지원한 공모사업이 채택된 경우 0.5배 가산점		
비고	※ 기준일: ¤ 공모를 통한 채택건의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2015년 공모한 사업을 기준으로 채택시점이 평가 이전 서류제출이 가능할 경우를 인정 가능함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이내에 공모 또는 위탁받은사업, 2015년에 실시하는 사업		

평가지표	신규사업노력시도	평가점수	3점
평가목표	2015년에 신규사업단으로 새로운 사업단을 기획하여 실행하는 것을 검토		
평가대상자	지역자활센터 신규사업, 파일럿사업단이 본사업화 된 사업단		
평가내용	□ 신규사업노력시도 2015년 신규사업으로 인정된 건수로 파일럿 사업이 본 사업화된 경우, 제안후 채택된 사업을 검토하고자 함 □ 신규사업노력시도 인정범위 ○ 파일럿사업으로 운영하다가 본 사업단으로 설치된 경우 ○ 2015년 신규사업건수 ※ 단, 사업단의 분리, 병합, 명칭변경, 사업 아이템 추가는 신규사업으로 인정불가능하며, **2년 이상(최대3년) 운영 후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서 폐업 후 신규사업을 시도하는 건도 불가능함.** ○ 제안후 채택된 사업 - 복지부 공모, 광역·지역 특화형 채택건수 **○ 복지부 사업에 공모한 경우**		
증빙서류	□ 증빙서류 ○ 필수서류: 〔양식-3〕에 의거한 서류를 작성하되 반드시 지자체 담당자 서명후 제출		
평가방법 (산식)	**신규사업노력시도 인정범위에 있는 사업의 달성여부로 점수부여**		
비고			
Q/A	Q: 사회적일자리형 사업단에서 시장진입형으로 전환된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8 지역일자리 연계 및 특화사업

평가지표	지역의 취약계층 지원	평가점수	4점
평가목표	지역자활센터가 자활사업 참여자 이외의 지역의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 특례)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		
평가대상자	지역의 자활사업 미참여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 특례) 게이트웨이(Gateway) 30일미만 참여자 ※ 일반인은 제외		
평가내용	□ 지역의 취약계층 자립기여 해당 지역 취약계층 (수급자, 차상위, 특례)에 대한 일자리 제공, 기타 복지서비스연계 제공의 비율		
증빙서류	□ 증빙서류 ○ 필수서류: (모두제출) ① 사례관리자료 - 사례관리자료에는 대상자의 수급유형, 인적사항, 대상자의 욕구사정과 구체적인 서비스 계획, 제공, 사례관리일자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② 취업성공자 - 2015년 취업을 확인 할 수 문서(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취업증명서 등) - 월평균 급여가 최저임금(1,166,200원)을 확인 할 수 있는 문서(취업기간내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등) - 고용보험 가입을 확인 할 수 있는 문서(고용보험 득실확인서) ※ 필수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대체서류로 제출 가능함. ○ 취업성공자 대체서류: [양식-1] 양식에 의거한 서류를 작성하되, 고용보험 사업장 관리번호를 반드시 명시할 것		
평가방법 (산식)	(지역자활센터 복지연계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건수+취업성공건수*0.5)/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수* * 종사자수는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 직무교육 대상자 수 ※ 일자리 제공의 결과 취업을 성공하였을 경우 0.5배 가중치 부여		
비고			

평가지표	사회적 경제 협력건수	평가점수	2점
평가목표	센터가 지역의 사회적 경제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		
평가대상자	지역자활센터		
평가내용	□ 사회적경제 관련 네트워크 ① 지역자활센터와 사회적 경제 단체들과 공식적인 업무협약이 1년간 3개 이상의 단체(기관)와 체결되었는지 여부 ② 업무협약에 의해 체결된 단체(기관)와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1개이상있는지 여부 □ 사회적 경제 관련 네트워크 건수 인정불가능한 건 ① 지역자활센터와 자활내부의 기관(타지역자활센터, 광역, 중앙자활센터, 협회, 지부 등) 과의 네트워크건은 불인정 ② 단순행사참석(ex. 개소식, 송년의밤 등) 은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건으로 불인정		
증빙서류	□ 증빙서류 ○ 필수서류: 업무협약서, 양해각서 등 ※ 2015년에 진행된 건수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함. ※ 만일 사업의 특성상 계속사업의 특성을 지닌 경우 업무협약서나 양해각서에 지속적인 협약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내용이 확인 가능 할 경우만 당해연도 실적으로 인정		
평가방법 (산식)	사회적경제 관련 네트워크 달성여부		
비고			
Q/A			

평가지표	사업단위별 네트워크 참여도(신규)	평가점수	2점
평가목표	지역자활센터가 자활사업을 운영하면서 광역 및 지부와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사업 운영 및 확장에 이익이 되도록함을 검토		
평가대상자	지역자활센터의 네트워크 참여		
평가내용	□ 사업단위별 네트워크 참여도 ① 광역자활센터 사업 네트워크 참여를 연 4회이상 참여하였다. ② 지부 및 사업별 네트워크 참여를 연 4회이상 참여하였다.		
증빙서류	□ 증빙서류 ○ 필수서류:(모두제출) ① 참석 관련 공문 ② 내부결과보고결제문서		
평가방법 (산식)	평가내용상 네트워크 참여 비율		
비고			

4. 부록

[양식 1] 취업 확인서 양식

<table>
<tr><td>성명</td><td colspan="3"></td></tr>
<tr><td>성별</td><td>남(　　) / 여(　　)</td><td>연령</td><td>만(　　)세</td></tr>
<tr><td>주소</td><td colspan="3"></td></tr>
<tr><td>취업처명</td><td></td><td>업종</td><td></td></tr>
<tr><td>업체주소</td><td colspan="3">사업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업체규모(근무자수) :</td></tr>
<tr><td rowspan="2">월급여</td><td rowspan="2">(　　)만원</td><td>취업일자</td><td></td></tr>
<tr><td>퇴직일자</td><td></td></tr>
<tr><td>주당근무시간</td><td colspan="3">주(　　)시간　근무시간 :</td></tr>
<tr><td>4대보험
가입여부</td><td colspan="3">☐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포함)
☐ 국민연금
☐ 고용보험(*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
☐ 산재보험</td></tr>
<tr><td>확인자 성명</td><td></td><td>확인자 전화번호
(H.P)</td><td></td></tr>
<tr><td colspan="4">상기인은 (　　)년 (　　)월 (　　)일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직인)
용　도 : 기관제출용</td></tr>
</table>

*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확인방법?** 취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지원센터에서 전화로 확인가능함

[양식 2] 후원금수입 및 지출결과보고서

□ 수입

1. 후원금 수입명세서

순번	발생일자	후원금종류	후원자 구분	내역	금액	비고

2. 후원금품 수입명세서

순번	발생일자	후원품종류	후원자 구분	내역	품명	수량/단위	상당금액	비고

□ 지출

3. 후원금 지출명세서

순번	사용일자	후원금종류	후원자 구분	지출내역	금액	비고

4. 후원금품 지출명세서

순번	사용일자	후원금품종류	후원자 구분	지출내역	상당금액	비고

[양식 3] 신규사업노력시도

□ 2015년 사업

유형	사업단명	사업단유형	설립일
시범(Pilot)사업→본사업			
2015년 신규사업			
제안후 채택된 사업			
복지부 사업에 공모한경우			

□ 작성자 서명

구분	직책	성명	확인
(센터명)			
(지자체명)			

※ 단, 사업단의 분리, 병합, 명칭변경, 사업 아이템 추가는 신규사업으로 인정불가능하며, **2년 이상(최대3년) 운영 후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서 폐업 후 신규사업을 시도하는 건도 불가능함.**

[양식 4] 사례관리 체크리스트

사례관리 체크리스트

영역	평가내용	해당여부		평가 자료 (모두제출)
		예	아니요	
환경 (05.점)	- 지역자활센터에 사례관리대상자들을 위한 상담을 제공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①사례관리 상담실사진
인력 (05.점)	- 지역자활센터 내부에 경험이 있는 사례관리담당자가 1명이상 인원이 있다.			①조직도 ②경력증명서
슈퍼비전 (05.점)	- 사례관리팀의 사례관리 내용은 월 1회이상 센터내 센터장에게 보고되며 슈퍼비전을 받는다			①센터장이나 실장이 슈퍼비전을 제공한 사례관리보고자료(12건)
내부 협력 (05.점)	- 팀원간 사례(조정)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규사업프로그램 개발이나 기존사업 프로그램조정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①팀원간 사례조정회의 결과보고서
교육 (1점)	- 사례관리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사례관리 관련 외부교육을 년 2회이상 참석하도록 하고 있다.			①내부결과보고결제문서(2건)
외부 전문가 참여 (1점)	- 내부 사례회의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진행하는 회의를 최소 연 2회이상 진행하고 있다.			①외부전문가 참석사례회의 일지(2건) ②외부전문가 이력서나 프로필
우수 사례 선정 (1점)	- 중앙자활센터 및 보건복지부를 통한 공모를 통해 우수사례로 정해진 경우가 있다.			①공모결과서

〔부록-1〕 2014년도공공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304개) *2015년 데이터는 추후 업데이트 예정

주무부처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187)
	시장형(14)	준시장형(16)	기금관리형(17)	위탁집행형(70)	
기획재정부(3)		한국조폐공사(1)			한국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2)
교육부(2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2)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18)
미래창조과학부(39)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1)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8)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 기초기술연구회,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산업기술연구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건설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30)
외교부(3)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3)
통일부(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2)

주무부처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187)
	시장형(14)	준시장형(16)	기금관리형(17)	위탁집행형(70)	
법무부(3)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3)
국방부(2)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2)
안전행정부(3)			공무원연금공단(1)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1)
문화체육관광부(34)		한국관광공사(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4)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한국문화진흥(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태권도진흥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아시아문화개발원, 세종학당재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국민생활체육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게임물관리위원회, (재)한국문화정보센터, (재)한국공연예술센터, (재)체육인재육성재단, (재)예술의전당,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명동·정동 극장, (재)국악방송, (사)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7)
농림축산식품부(9)		한국마사회(1)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5)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자금관리단 (3)
산업통상자원부(41)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2)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	㈜강원랜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기초전력연구원, 인천종합에너지(주),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전력기술(주), 한국표준협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전원자력연료

주무부처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187)
	시장형(14)	준시장형(16)	기금관리형(17)	위탁집행형(70)	
	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10)			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13)	(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4)
보건복지부(18)			국민연금공단(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6)	(재)한국보육진흥원, (재)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암센타,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한국건강증진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1)
환경부(5)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1)
고용노동부(12)			근로복지공단(1)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5)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6)
여성가족부(5)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

주무부처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187)
	시장형(14)	준시장형(16)	기금관리형(17)	위탁집행형(70)	
				원 (2)	
국토교통부(23)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2)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7)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한지적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5)	㈜워터웨이플러스,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항공안전기술센터 (9)
해양수산부(14)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2)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3)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3)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항로표지기술협회 (6)
국무조정실(2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4)
방송통신위원회(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1)			
원자력안전위원회(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1)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1)
금융위원회(12)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2)	한국정책금융공사, 코스콤,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산은금융지주 (5)

주무부처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187)
	시장형(14)	준시장형(16)	기금관리형(17)	위탁집행형(70)	
			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5))		
공정거래위원회 (2)				한국소비자원(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
국가보훈처(3)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	88관광개발(주)(1)
방위사업청(2)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2)
문화재청(1)					한국문화재보호재단(1)
산림청(2)				한국임업진흥원(1)	녹색사업단(1)
농촌진흥청(1)				농업기술실용화재단(1)	
중소기업청(7)			중소기업진흥공단(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4)
특허청(4)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재)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4)
식품의약품안전처(3)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1)	한국희귀의약품센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2)
기상청(1)				한국기상산업진흥원(1)	
경찰청(1)				도로교통공단(1)	
소방방재청(1)				한국소방산업기술원(1)	

♧ NOTE...